

[별표 1]<개정 1994·12·31, 1995·12·30, 1996·12·31, 1997·12·31, 1998·5·16>

대도시권의 지역(제38조 및 제40조 관련)

구 분	지 역
1. 수도권	가. 서울특별시 나. 인천광역시(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) 다. 수원시·성남시·의정부시·부천시·안양시·광명시·안산시·과천시·구리시·오산시·군포시·의왕시·시흥시·하남시·남양주시·고양시·용인시(기흥읍·구성면·수지면·남사면에 한한다)·평택시(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) 라. 양주군 주내면·백석면·장흥면 마. 포천군 소흘읍 바. 삭제<1996·12·31> 사. 화성군 태안읍·반월면·매송면·봉담면·정남면·동탄면 아. 삭제<1996·12·31> 자. 김포군 김포읍·고촌면
2.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	및 그 관할구역(가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)
3. 광주직할시 및 대전직할시	및 그 관할구역

<비고>

-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,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.
- 제2호의 경우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신평·장림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지방산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 및 제3차단지,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.
-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서 제3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제3호의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제3호의 경우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하남지방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전 제3지방산업단지 및 제4지방산업단지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,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인 지정한 평동지방산업단지를

제외한다.